|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기업신용 관리방법**해관총서령[2018] 237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신용 관리방법>이 2018년 1월 29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서장 위광저우(于廣洲)2018년 3월 3일제1장 총칙제1조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키고 기업 수출입 신용 관리제도를 수립하며 무역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세관에서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기업과 기업관련인원의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공시와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인정 및 관리 등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제3조 세관은 기업의 신용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을 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 및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 인증기업은 고급인증기업 및 일반인증기업으로 구분한다.세관은 법률을 준수하는 신용양호 기업에게는 편리를 제공하고 버률을 위반하는 신용불량 기업은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기 기업에 대하여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적용한다.제4조 세관은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국가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신용양호자에 대한 연합장려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합징계를 실시하고 정보 상호교환, 감독관리 상호인정, 법 집행 상호협력(이하 '3상호'로 약칭)을 추진한다.제5조 인증기업은 세관이 인증한 경영자(AEO)를 지칭한다. 중국 세관은 관련 국제협약•협정과 이 방법에 근거하여 기타 국가•지역 세관 간의 AEO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상호인정기업에게 관련 편리조치를 제공한다.중국 세관은 국제협력의 수요에 근거하여 '3상호' 세관 협력을 추진한다.제2장 신용정보의 수집과 공시제6조 세관은 기업의 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1) 기업의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 정보와 기업관련인원의 기본정보;(2) 기업의 수출입 정보와 수출입 관련 경영정보;(3) 기업의 행정허가 정보;(4) 기업 및 기업관련인원의 행정처벌•형사처벌 정보;(5) 세관 및 국가 유관부서가 실시한 연합장려 및 연합징계 정보;(6) AEO 상호인정 정보;(7) 기업의 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제7조 세관은 기업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업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 신용정보 연도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당해 연도에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세관에 <기업 신용정보 연도보고서>를 제출한다.제8조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에 수록하여야 한다.(1) 규정에 따라 세관에 <기업 신용정보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현장답사 결과 세관에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가 확인 불가능하고 세관에 등기된 연락방식을 통해 기업과 연락이 되지 아니할 경우.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에 수록된 기간 내에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사유가 제거된 후 세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제9조 세관은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1) 기업이 세관에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정보;(2)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세관의 인정결과;(3) 기업에 대한 세관의 행정허가 정보;(4) 기업에 대한 세관의 행정처벌 정보;(5) 세관이 국가 유관부서와 실시한 연합장려 및 연합징계 정보;(6) 세관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7) 법에 의거하여 응당히 공시하여야 하는 기타 정보.기업에 대한 세관의 행정처벌 정보의 공시기한은 5년이다.세관은 상기 신용정보의 조회방식을 공개하여야 한다.제10조 세관이 공시한 신용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은 세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련 자료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의 이의 제기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세관은 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제3장 기업 신용상황 인정 기준과 절차제11조 인증기업은 해관총서가 제정한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세관 인증기업 표준>은 고급인증기업 표준 및 일반인증기업 표준으로 구분한다.제12조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1) 밀수 범죄를 범하였거나 밀수 행위를 행한 경우;(2) 비(非)통관대행기업으로 1년 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횟수가 직전연도의 세관신고서, 출입국비안(備案)리스트, 출입국운송수단 적하목록 등 수출입서류 표수의 1‰을 초과하였고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행정처벌 누계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통관대행기업으로 1년 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횟수가 직전연도의 세관신고서, 출입국비안(備案)리스트, 출입국운송수단 적하목록 등 수출입서류 표수의 0.5‰을 초과하였고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행정처벌 누계금액이 3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 (3) 세금 또는 과징금•몰수금을 체납한 경우;(4) 이 방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관의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에 수록된 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5) 세관 또는 기타 기업의 명의를 사칭하여 부정당 이익을 취한 경우;(6) 세관에 진실된 상황을 숨기거나 조작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신용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7) 세관 공무원의 법에 의거한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였고 그 경위가 심각한 경우;(8) 형사범죄로 인하여 국가 신용불량자 연합징계 명단에 추가된 경우;(9)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의 경우.당해 연도에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비(非)통관대행기업•통관대행기업이 1년 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행정처벌 누계금액이 각각 100만위안, 3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제13조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을 일반신용기업으로 인정한다.(1) 세관에서 처음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기업;(2) 인증기업이 더 이상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이 방법 제12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3) 세관에 의해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2년 연속 이 방법 제12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제14조 인증기업 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인증기업 관리 적용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제15조 세관은 <인증기업 관리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기업의 신용상황이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인증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제16조 기업이 인증을 통과한 경우 세관은 <인증기업증서>를 제작 및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인증기업 관리 부적용 결정서>를 제작 및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증서>, <인증기업 관리 부적용 결정서>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기업이 인증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1년 동안 세관에 인증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제17조 인증을 신청한 상태에서 기업이 밀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거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세관은 인증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기업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혐의로 입안(立案)조사를 받을 경우 세관은 인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인증을 신청한 상태에서 기업이 세관의 조사(稽査)•확인검사(核査)를 받게 된 경우 세관은 인증 절차를 중지(中止)할 수 있다. 중지(中止)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인증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제18조 세관은 고급인증기업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재인증을 실시하며 일반인증기업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재인증을 실시한다. 세관은 재인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인증 절차를 참조하여 재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기업 신용등급 인정 결정서>를 제작 및 발급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업 신용등급 인정 결정서>는 기업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일로부로 효력을 발생한다.재인증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기업이 인증기업 관리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9조 인증기업의 신용등급이 세관에 의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된 경우 1년 동안 인증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업의 신용등급이 신용불량기업으로 조정된 경우 2년 동안 일반신용기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급인증기업의 신용등급이 세관에 의해 일반인증기업으로 조정된 경우 1년 동안 고급인증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제20조 세관에 의해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된 후 2년 연속 이 방법 제12조에 열거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신용불량기업을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신용불량기업에서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된 후 기업은 세관에 인증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제21조 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뤄진 경우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세관의 인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1) 기업의 존속분할이 이뤄진 경우 분할전기업의 주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존속기업이 분할전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세관의 인정결과를 적용받으며 기타 분할기업은 처음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기업으로 간주한다.(2) 기업의 소멸분할이 이뤄진 경우 분할기업을 처음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기업으로 간주한다.(3) 기업의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합병기업이 합병 후 존속기업에 대한 세관의 인정결과를 적용받는다.(4) 기업의 신설합병이 이뤄진 경우 합병기업을 처음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기업으로 간주한다.제22조 세관 또는 기업은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기업 인증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 결론을 발행받을 수 있다.제4장 관리조치제23조 일반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1) 수출입화물에 대한 평균 검사율을 일반신용기업 평균 검사율의 50% 이하로 축소한다.(2) 수출입화물 통관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3) 세관이 담보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기업이 부담 가능한 세금 총액 또는 해관총서가 규정한 금액보다 적게 수취할 수 있다.(4)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제24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에 적용되는 관리조치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1) 수출입화물에 대한 평균 검사율을 일반신용기업 평균 검사율의 20% 이하로 축소한다.(2) 세관에 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3) 기업에 대한 조사(稽査)•확인검사(核査) 빈도수를 줄인다.(4) 수출화물이 세관감독관리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5) 기업을 위하여 세관연락관을 지정한다.(6) AEO 상호인정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에서 통관 혜택을 누린다.(7) 국가 유관부서가 실시하는 신용양호자 연합장려 조치를 적용받는다.(8)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된 국제무역이 회복된 후 우선적 통관 혜택을 누린다.(9)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제25조 신용불량기업은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1) 수출입화물에 대한 평균 검사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한다.(2)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검출되지 아니한 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는 리프팅 비용, 이적 비용, 저장 비용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3)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견본비치•영상촬영 후 통과시키는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가공무역을 경영하는 경우 전액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6) 기업에 대한 조사(稽査)•확인검사(核査) 빈도수를 늘린다.(7) 국가 유관부서가 실시하는 신용불량자 연합징계 조치를 적용받는다.(8)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제26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에 비해 보다 우대적인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기업 신용상황 인정결과 불일치로 인하여 적용 가능한 관리조치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 세관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제27조 인증기업이 밀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거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세관은 해당 관리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혐의로 입안(立案)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세관은 해당 관리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세관이 해당 관리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일반신용기업으로 간주하여 관리를 실시한다.제28조 기업의 신용등급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하향조정되는 경우 세관은 해당 관리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고 조정 후의 신용등급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제5장 부칙제29조 기업 신용상황의 인증 근거가 되는 밀수 범죄는 사법기관의 관련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기업 신용상황의 인증 근거가 되는 밀수 행위,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행위는 세관이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기업이 자진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경고 또는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행위는 세관이 기업 신용상황 인증 시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제30조 이 방법에서 하기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기업관련인원'이라 함은 기업의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재무책임자, 세관업무책임자 등 관리인원을 지칭한다.'처벌금액'이라 함은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행위 발생 후 세관이 부과한 과징금, 세관이 몰수한 위법소득 또는 몰수한 화물•물품 가액의 합계를 지칭한다.'체납 세금'이라 함은 세금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아니한 수출입화물•물품의 수출입관세와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리징수하는 세금의 합계를 지칭하며 세관의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판정에 따라 내려진 처벌과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포함한다.'체납 과징금•몰수금'이라 함은 세관의 행정처벌결정서에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아니한 세관이 부과한 과징금, 세관이 몰수한 위법소득 및 밀수화물•물품 등의 가액을 지칭한다.'일'이라 함은 달력일을 지칭한다.'1년'이라 함은 연속되는 12개월을 지칭한다.'연도'라 함은 하나의 양력연도를 지칭한다.'이상',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한다.'인증을 거친 경영자(AEO)'라 함은 임의의 방식으로 화물 국제유통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과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며 세관의 인증을 통과한 기업을 지칭한다.제31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제32조 이 방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10월 8일 해관총서령 제225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신용 관리 잠정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海关总署令〔2018〕237 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已于2018年1月29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8年5月1日起施行。　　署长 于广洲　　2018年3月3日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建立企业进出口信用管理制度，促进贸易安全与便利，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以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海关注册登记和备案企业以及企业相关人员信用信息的采集、公示，企业信用状况的认定、管理等适用本办法。　　第三条 海关根据企业信用状况将企业认定为认证企业、一般信用企业和失信企业。认证企业分为高级认证企业和一般认证企业。海关按照诚信守法便利、失信违法惩戒原则，对上述企业分别适用相应的管理措施。　　第四条 海关根据社会信用体系建设有关要求，与国家有关部门实施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推进信息互换、监管互认、执法互助（以下简称“三互”）。第五条 认证企业是中国海关经认证的经营者（AEO）。中国海关依据有关国际条约、协定以及本办法，开展与其他国家或者地区海关的AEO互认合作，并且给予互认企业相关便利措施。　　中国海关根据国际合作的需要，推进“三互”的海关合作。第二章　信用信息采集和公示　　第六条 海关可以采集能够反映企业信用状况的下列信息：　　（一）企业注册登记或者备案信息以及企业相关人员基本信息；　　（二）企业进出口以及与进出口相关的经营信息；　　（三）企业行政许可信息；　　（四）企业及其相关人员行政处罚和刑事处罚信息；　　（五）海关与国家有关部门实施联合激励和联合惩戒信息；　　（六）AEO互认信息；　　（七）其他能够反映企业信用状况的相关信息。　　第七条 海关建立企业信用信息管理系统，对有关企业实施信用管理。企业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管理系统向海关提交《企业信用信息年度报告》。　　当年注册登记或者备案的企业，自下一年度起向海关提交《企业信用信息年度报告》。　　第八条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将其列入信用信息异常企业名录：　　（一）未按照规定向海关提交《企业信用信息年度报告》的；　　（二）经过实地查看，在海关登记的住所或者经营场所无法查找，并且无法通过在海关登记的联系方式与企业取得联系的。　　列入信用信息异常企业名录期间，企业信用等级不得向上调整。　　本条第一款规定的情形消除后，海关应当将有关企业移出信用信息异常企业名录。　　第九条 海关应当在保护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前提下，公示下列信用信息：　　（一）企业在海关注册登记或者备案信息；　　（二）海关对企业信用状况的认定结果；　　（三）海关对企业的行政许可信息；　　（四）海关对企业的行政处罚信息；　　（五）海关与国家有关部门实施联合激励和联合惩戒信息；　　（六）海关信用信息异常企业名录；　　（七）其他依法应当公示的信息。　　海关对企业行政处罚信息的公示期限为5年。　　海关应当公布上述信用信息的查询方式。　　第十条 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认为海关公示的信用信息不准确的，可以向海关提出异议，并且提供相关资料或者证明材料。　　海关应当自收到异议申请之日起20日内进行复核。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提出异议的理由成立的，海关应当采纳。第三章　企业信用状况的认定标准和程序　　第十一条 认证企业应当符合海关总署制定的《海关认证企业标准》。　　《海关认证企业标准》分为高级认证企业标准和一般认证企业标准。第十二条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认定为失信企业：　　（一）有走私犯罪或者走私行为的；　　（二）非报关企业1年内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次数超过上年度报关单、进出境备案清单、进出境运输工具舱单等相关单证总票数千分之一且被海关行政处罚金额累计超过100万元的；　　报关企业1年内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次数超过上年度报关单、进出境备案清单、进出境运输工具舱单等相关单证总票数万分之五且被海关行政处罚金额累计超过30万元的；　　（三）拖欠应缴税款或者拖欠应缴罚没款项的；　　（四）有本办法第八条第一款第（二）项情形，被海关列入信用信息异常企业名录超过90日的；　　（五）假借海关或者其他企业名义获取不当利益的；　　（六）向海关隐瞒真实情况或者提供虚假信息，影响企业信用管理的；　　（七）抗拒、阻碍海关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情节严重的；　　（八）因刑事犯罪被列入国家失信联合惩戒名单的；　　（九）海关总署规定的其他情形。　　当年注册登记或者备案的非报关企业、报关企业，1年内因违反海关监管规定被海关行政处罚金额分别累计超过100万元、30万元的，海关认定为失信企业。　　第十三条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认定为一般信用企业：　　（一）在海关首次注册登记或者备案的企业；　　（二）认证企业不再符合《海关认证企业标准》，并且未发生本办法第十二条规定情形的；　　（三）自被海关认定为失信企业之日起连续2年未发生本办法第十二条规定情形的。　　第十四条 企业申请成为认证企业，应当向海关提交《适用认证企业管理申请书》。海关按照《海关认证企业标准》对企业实施认证。　　第十五条 海关应当自收到《适用认证企业管理申请书》之日起90日内对企业信用状况是否符合《海关认证企业标准》作出决定。特殊情形下，海关认证时限可以延长30日。　　第十六条 通过认证的企业，海关制发《认证企业证书》；未通过认证的企业，海关制发《不予适用认证企业管理决定书》。《认证企业证书》《不予适用认证企业管理决定书》应当送达申请人，并且自送达之日起生效。　　企业主动撤回认证申请的，视为未通过认证。　　未通过认证的企业1年内不得再次向海关提出认证申请。　　第十七条 申请认证期间，企业涉嫌走私被立案侦查或者调查的，海关应当终止认证。企业涉嫌违反海关监管规定被立案调查的，海关可以终止认证。申请认证期间，企业被海关稽查、核查的，海关可以中止认证。中止时间超过3个月的，海关终止认证。　　第十八条 海关对高级认证企业每3年重新认证一次，对一般认证企业不定期重新认证。　　重新认证前，海关应当通知企业，并且参照企业认证程序进行重新认证。对未通过重新认证的，海关制发《企业信用等级认定决定书》，调整企业信用等级。《企业信用等级认定决定书》应当送达企业，并且自送达之日起生效。　　重新认证期间，企业申请放弃认证企业管理的，视为未通过认证。　　第十九条 认证企业被海关调整为一般信用企业管理的，1年内不得申请成为认证企业。认证企业被海关调整为失信企业管理的，2年内不得成为一般信用企业。　　高级认证企业被海关调整为一般认证企业管理的，1年内不得申请成为高级认证企业。　　第二十条 自被海关认定为失信企业之日起连续2年未发生本办法第十二条规定情形的，海关应当将失信企业调整为一般信用企业。　　失信企业被调整为一般信用企业满1年，可以向海关申请成为认证企业。　　第二十一条 企业有分立合并情形的，海关对企业信用状况的认定结果按照以下原则作出调整：　　（一）企业发生存续分立，分立后的存续企业承继分立前企业的主要权利义务的，适用海关对分立前企业的信用状况认定结果，其余的分立企业视为首次注册登记或者备案企业；　　（二）企业发生解散分立，分立企业视为首次注册登记或者备案企业；　　（三）企业发生吸收合并，合并企业适用海关对合并后存续企业的信用状况认定结果；　　（四）企业发生新设合并，合并企业视为首次注册登记或者备案企业。　　第二十二条 海关或者企业可以委托社会中介机构就企业认证相关问题出具专业结论。第四章　管理措施　　第二十三条 一般认证企业适用下列管理措施：　　（一）进出口货物平均查验率在一般信用企业平均查验率的50%以下；　　（二）优先办理进出口货物通关手续；　　（三）海关收取的担保金额可以低于其可能承担的税款总额或者海关总署规定的金额；　　（四）海关总署规定的其他管理措施。　　第二十四条 高级认证企业除适用一般认证企业管理措施外，还适用下列管理措施：　　（一）进出口货物平均查验率在一般信用企业平均查验率的20%以下；　　（二）可以向海关申请免除担保；　　（三）减少对企业稽查、核查频次；　　（四）可以在出口货物运抵海关监管区之前向海关申报；　　（五）海关为企业设立协调员；　　（六）AEO互认国家或者地区海关通关便利措施；　　（七）国家有关部门实施的守信联合激励措施；　　（八）因不可抗力中断国际贸易恢复后优先通关；　　（九）海关总署规定的其他管理措施。　　第二十五条 失信企业适用下列管理措施：　　（一）进出口货物平均查验率在80%以上；　　（二）不予免除查验没有问题企业的吊装、移位、仓储等费用；　　（三）不适用汇总征税制度；　　（四）除特殊情形外，不适用存样留像放行措施；　　（五）经营加工贸易业务的，全额提供担保；　　（六）提高对企业稽查、核查频次；　　（七）国家有关部门实施的失信联合惩戒措施；　　（八）海关总署规定的其他管理措施。　　第二十六条 高级认证企业适用的管理措施优于一般认证企业。　　因企业信用状况认定结果不一致导致适用的管理措施相抵触的，海关按照就低原则实施管理。　　第二十七条 认证企业涉嫌走私被立案侦查或者调查的，海关应当暂停适用相应管理措施。认证企业涉嫌违反海关监管规定被立案调查的，海关可以暂停适用相应管理措施。海关暂停适用相应管理措施的，按照一般信用企业实施管理。　　第二十八条 企业有本办法规定的向下调整信用等级情形的，海关停止适用相应管理措施，按照调整后的信用等级实施管理。第五章　附 则　　第二十九条 作为企业信用状况认定依据的走私犯罪，以司法机关相关法律文书生效时间为准进行认定。　　作为企业信用状况认定依据的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以海关行政处罚决定书作出时间为准进行认定。　　企业主动披露且被海关处以警告或者5万元以下罚款的行为，不作为海关认定企业信用状况的记录。　　第三十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是：　　“企业相关人员”，指企业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财务负责人、关务负责人等管理人员。　　“处罚金额”，指因发生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被海关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或者没收货物、物品价值的金额之和。　　“拖欠应纳税款”，指自缴纳税款期限届满之日起超过3个月仍未缴纳进出口货物、物品应当缴纳的进出口关税、进口环节海关代征税之和，包括经海关认定违反海关监管规定，除给予处罚外，尚需缴纳的税款。　　“拖欠应缴罚没款项”，指自海关行政处罚决定书规定的期限届满之日起超过6个月仍未缴纳海关罚款、没收的违法所得和追缴走私货物、物品等值价款。　　“日”，指自然日。　　“1年”，指连续的12个月。　　“年度”，指1个公历年度。　　“以上”“以下”，均包含本数。　　“经认证的经营者（AEO）”，指以任何一种方式参与货物国际流通，符合本办法规定的条件以及《海关认证企业标准》并且通过海关认证的企业。　　第三十一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三十二条 本办法自2018年5月1日起施行。2014年10月8日海关总署令第225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同时废止。　　　 　　 |